



성별영향평가 지침



I. 성별영향평가(性別影響評價) 제도 개요



01	I.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02	II. 2005년까지의 추진 경과
05	III. 2006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05	1. 추진 목표 및 전략
06	2. 평가 개요
08	3. 평가 대상 정책
10	4. 평가 지표
12	5. 평가 유형별 세부 추진 방법
15	6. 추진 절차 및 일정
18	IV. 종합 평가 및 평가 결과 활용 방안
19	V. 행정 사항
22	(첨부 자료1) 각종 양식
28	(첨부 자료2) 참고 자료

* 개념

-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도구

* 필요성

- 정책의 성 차별성을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 제고
-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마련

* 추진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외국 사례

-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으로 정책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을 분석의 필요성이 명시됨.
- ※ 현재 영국(Gender impact assessment), 캐나다(Gender analysis), UN, ILO 등 약 40여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별영향평가(또는 성 분석) 시행 중

II. 2005년까지의 추진 경과

- 2002년 추진 근거 마련 이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중앙과 광역지자체에 적용함으로써 정책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이 일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 마련

1. 2004년까지의 추진 경과

* 성별영향평가 추진 근거 마련

- 여성발전기본법('02.12) 및 동법 시행령('03.3) 개정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03~'07)의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로 포함
 - ▷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 중 '정책의 성별분석제도 구축'

*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 남녀별 통계 생산 방안 연구 및 각 기관 남녀별 통계 생산 권고('01~)
- 정부부처내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
 - ▷ 제1차 여성정책조정회의('03.9.24), 여성정책책임관회의('04.5.28), 국무회의시('04.7.6)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보고
 - ※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 : '정책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모든 정책의 입안시 반영할 것을 검토'

* 성별영향평가 시범 사업 추진

- 평가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 교육 실시('04.8월)
- 주요정책 심층 평가 연구용역 사업 추진('04.8월~12월)
 - ▷ 보건·복지, 인적자원개발, 기타 형사 및 문화 분야의 10개 주요정책 대상

2004년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 과제

1	수형자 직업훈련 정책	법무부	6	암 관리 정책	보건복지부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법무부	7	재직자 직업훈련	노동부
3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	과학기술부	8	서울시 복지정책	서울시
4	농업인력 육성 정책	농림부	9	충북 장애인 정책	충청북도
5	문화기반시설·생활체육시설	문화관광부	10	전북 노인 정책	전라북도

* 성별영향평가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

연번	평가 과제	정책 개선 사항
1	수형자 직업훈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여자 정예직업훈련소 지정(청주여자교도소, 2005.1) ▶ 여성 직업훈련 직종 및 인원 확대(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 7개 직종 180명 → '05년 8개 직종 194명 - 기술자격 취득후 숙련과정 신설, 2006년 시범운영 예정
2	문화기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정책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유아를 배려한 각종 편의 및 보안 시설 설치토록 지자체에 행정 지도
3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정보화교육 전문과정 중 농업연수원의 농업경영정보화 리더반 교육생 선발시 30% 이내에서 여성 우선 선발 ▶ 2005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 지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체결시 여성참여비율을 15% 이상으로 규정 ▶ 「중장기 농촌지역 인력 육성 대책('05.4)」에 교육생 선발시 여성 비율 점진적 확대
4	재직자 직업훈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수강지원금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을 e-Learning과정까지 확대('05.1) ▶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혜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훈련지원을 인상(90% → 100%)('05.2월)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구성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 참여기업 30개 → 20개

2. 2005년 추진 실적

*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 구축 및 기관별 평가 추진

- 「2005년 성별영향평가 안내서」 제작·보급('05.3)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지정('05.3)
- 기관별 평가 결과 종합 및 평가
 - ▷ 우수 기관 및 우수 사례 선정('06년 2월 말 완료 예정)

추진결과

- 총 57개 기관 중 55개 기관이 참여 ⇒ 96.5%
 - ▶ 중앙행정기관 41개 기관 중 39개 기관(95.12%)이 참여
 - ※ 미참여 기관(2개) : 국정홍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총 85개 과제 ⇒ 1개 기관당 평균 1.5개
 - ▶ 중앙행정기관 평균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균 1.8개
 - ※ 최다 과제 선정 기관 : 경기도 8개, 노동부 및 경상남도 각 7개

* 성별영향평가 추진 역량 강화

-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 및 평가 대상 정책 담당자 교육
 - ▷ 평가 업무 담당자('05.3) 및 평가 대상 정책 담당자('05.6)
- 주요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제도화
 - ▷ 「2006년 예산안 편성 지침」 개정('05.3)
 - ▷ 법제업무 심사 관련 법제처 내부 지침 마련('05.5)

*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 인지적 정책 개선

- 2005년 심층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추진
 - ▷ 85개 과제 중 8개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05.8~12월)
 - ※ 참여기관 :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Ⅲ. 2006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및 전략

● 목표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착 및 운영 확산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 생산 기반 구축

● 추진 전략 ●

- 평가 추진 과정에 대한 컨설팅 활성화 및 관련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한 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 주요 평가제도, 업무혁신, 예산제도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으로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 외부 자원 활용, 평가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업무 역량 확대
-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대상 홍보 활동 강화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제고
- 연구·홍보·교육·컨설팅의 유기적 연계로 평가 기능의 시너지 효과 제고

2. 평가 개요

* 평가 적용 범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의무 적용 기관 : 41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05년과 동일)
- 시범 적용 기관 : 기초지방자치단체
 - ▷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만 한정함.

* 추진 체계

- 여성가족부 : 제도 운영 및 지원
 - ▷ 평가 지원 : 평가 지침 및 안내서 개발·보급,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제공, 관련 연구(심층 평가 등) 추진
 - ▷ 제도 개선 : 관련 규정 제·개정, 평가 결과 환류 방안 마련
 - ▷ 평가 종합 : 기관별 평가 추진 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평가 수행
 - ▷ 평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운영
 - ▷ 연도별 평가 추진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 ▷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
 - ▷ 자체 교육 실시
 -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추진 관리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담당 부서 및 평가 관리 책임

- 평가 담당 부서 : 여성정책 담당 부서
 - 여성정책 담당 부서가 없는 경우 정부업무평가 담당 부서
- ▷ 평가 담당 부서의 역할
 - 기관 내 평가 지침 보급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여 독려
 -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수립 및 평가 결과 종합
 - ※ 과제별 평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평가 대상 과제 담당자가 작성함.
- 평가 관리 책임
 - ▷ 중앙행정기관 : 여성정책책임관(첨부 2-4 참고)
 - 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
 - ▷ 지방자치단체 : 평가 담당 부서가 속한 실·국의 장

* 평가 유형

- '05년과 마찬가지로 자체 평가와 심층 평가로 나누어 추진하되 심층 평가를 기획 과제와 수시과제로 이원화



- ▷ 자체 평가 : 공무원이 직접 소관 업무에 대해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 심층 평가 : 여성가족부가 연구용역 형태로 추진
 - 기획 평가 : 규모가 큰 핵심 정책을 연초에 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 수시 평가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에 대해 수시로 평가
- 심층 평가 과제 발굴 경로 다양화
 - ▷ 각 기관의 신청, 전문가 의견 수렴, 여성가족부 자체 발굴 등
 - ※ '05년은 각 기관의 신청에 의해서만 심층 평가 과제를 선정하였음.

3. 평가 대상 정책

* 기관별 평가 과제 수

- 각 기관별로 평가 과제 1개 이상 선정
 - ▷ 심층 평가 과제도 소관 기관의 평가 과제 수에 포함
 - ※ 심층 평가 과제로 계획하였으나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자체 평가 과제로 추진



* 선정 기준

- 관련 통계상 정책 수혜도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정책 또는 향후 성별 격차 발생 우려가 있는 정책
- 수혜 대상 범위가 넓으며 파급 효과가 큰 중요 정책
 - ▷ 특히 여성권한척도(GEM) 등 양성평등 관련 국제 지표에 영향을 주는 정책
 - ※ GEM :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것으로 UN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UNDP(유엔개발계획)에서 매년 발표
- 예산 규모가 크며 국민적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정책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이미 양성평등한 정책 효과를 위해 계획·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 예 :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 모성 보호, 보육 정책 등
- '04~'05년 평가 과제도 선정 가능하나 평가 내용의 차별화 필요

성별영향평가 추진 대체

- 평가 과제 선정이 어려운 경우 소관 업무와 성별영향평가를 연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기관에 성별영향평가 대체 추진 인정
 - ※ '05년 추진 예
 - ▶ 기획예산처 : 「2006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 법 제 처 : 「성별영향평가 관련 법안 심사시 유의사항」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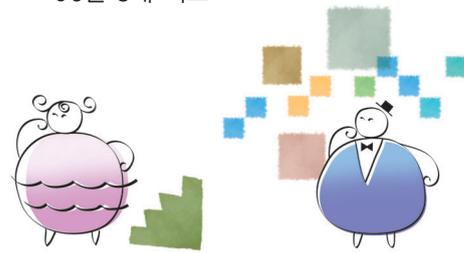
평가 대상 정책 예

분 야	평가 대상 정책 영역
행정 및 정책결정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관계 법령 제·개정 • 공무원 국내외 훈련, 공무원 시험 관리, 사무환경 개선 • 공무원 인사 교류, 파견 및 결원 보충제도 등 • 개방형 직위 운영, 국가 인재 관리 등
경제활동 및 고용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각종 조세 관련 제도 • 물가 안정 대책, 소비자 보호 정책, 시장경제제도 개선 • 일자리 창출 등 청년실업 대책,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 직업적응훈련 사업, 자활직업훈련 사업 등
교육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학교 인성 교육, 교과용 도서 개발 등 • 교육 소외계층 지원 등 교육 복지 정책 • 교원 양성·연수 등 교원 정책 등
복지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 각종 보건·의료 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노인·장애인 복지,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보육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최저생계비 지원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활공동체 육성 사업 등
가족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가족(모·부자가정, 미혼모 등) 지원 • 저출산 대비 정책, 모자보건 정책 • 부부 단위, 가족단위 상담·교육사업 실시 등
문화·사회·환경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문화활동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관광 육성 사업 • 수도 및 생활하수, 오염 물질의 위해 방지, 폐기물 등 자원 재활용정책, 지방의제21 조례 • 자원봉사자 육성·관리정책 등
기타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산불 피해 등에 대한 구호 업무 • 탈북자 지원 정책 •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령 및 정책, 농촌 정보화 사업 등

4. 평가 지표

* 지표 설정 방향

- 정책의 성별 영향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질적 지표 중심으로 구성
 - '05년 지표 중 유사 지표 통합, 실효성이 적은 지표 삭제 등을 통해 평가 수행을 용이하게 함.
- ※ '05년 9개 주요항목 16개 세부항목 → '06년 8개 지표



2005년과 2006년 성별영향평가 지표 비교

구 분	'05년 평가 지표 (주요항목)	'06년 평가 지표
공통사항	-	① 성별분리통계 생산·활용
1단계 정책 입안 및 결정	① 정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성별 관련성 파악 ②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수단 확인 ③ 정책입안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④ 정책의 성별영향 예측	②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③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④ 예산 편성의 양성평등성
2단계 정책 집행	⑤ 성 인지적 예산 편성 ⑥ 성 인지적 정책 서비스 전달 및 홍보	⑤ 정책서비스 전달 방식의 양성평등성 ⑥ 정책 홍보 방식의 양성평등성
3단계 정책 평가	⑦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⑧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⑨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⑦ 정책 수혜(예산 배분 결과 포함)의 양성평등성 ⑧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평가 지표와 점검 POINT

구 분	평가 지표	점검 POINT
공통사항	① 성별분리통계의 생산·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인적 통계 작성 양식에 성별을 구분하고 있는가 • 정책 기획서, 결과보고서에 인적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1단계 정책 입안 및 결정	②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 관련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기획안에 반영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의 요구, 통계상의 만족도 차이 등 확인 • 정책과 관련한 법령, 지침, 기본계획 등에 여성에 대한 별도의(특별한) 항목이 있는가 • 정책 대안 마련시 성별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는가
	③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자문, 심의, 의결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성별 위원 비율이 얼마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위원 비율이 최소 30% 이상을 만족하는가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07년 목표율은 38%임.
	④ 예산 편성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추진과 관련된 예산 중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⑤ 정책서비스 전달 방식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전달 체계(경로)에 따라 정책서비스에 대한 성별 접근도가 다르지 않은가
2단계 정책 집행	⑥ 정책 홍보방식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방식에 따라 정책서비스에 대한 성별 인지도가 다르지 않은가
	⑦ 정책 수혜(예산 배분 결과 포함)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가 • 예산 지원금의 규모에서 성별로 편차가 있지 않은가 • 1인당 평균 지원금이 성별로 차이나지 않은가 • 정책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 수혜자와 만족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3단계 정책 평가	⑧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집행 결과가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는가 • 정책이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에 기여하는가 • 정책집행의 결과가 향후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5. 평가 유형별 세부 추진 방법

1 자체평가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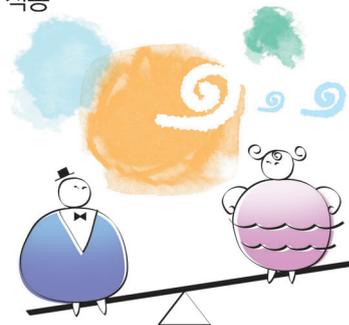
- 정책 담당자가 직접 소관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평가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당해 정책의 개선 뿐 아니라 양성평등한 정책 생산 능력 배양

*평가 계획 수립

- 기관 내, 외부 전문가, 고객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과제 발굴
- 평가 과제 소관 부서에서 과제별 계획 수립
- 성별영향평가 담당 부서가 기관 전체의 평가 계획 종합·제출 (첨부 자료 1-2 양식)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평가 대상 정책에 맞는 평가 지표로 개선
 - ▷ 정책의 특성상 평가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지표 변형 가능
- 평가 수행 및 보고서 작성(※ '성별영향평가 안내서' 참고)
 - ▷ 정책 진행 과정에 따라 평가 지표 점검하고 평가 결과 기록 (첨부 자료 1-3 양식)
 - ▷ 정책 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는 지표는 적용하지 않음.
 - ※ 예 : 정책 입안 및 결정만 이루어진 경우, 1단계 항목만 적용
- 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에 제출



자세 평가 업무 흐름도



2 심층 평가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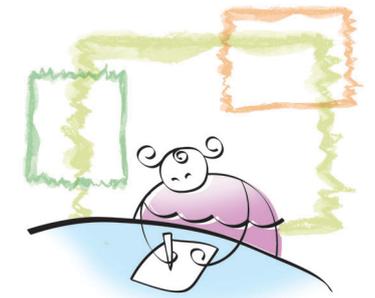
-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의 성별 영향을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 개선 추진

*추진 방법

구 분	기획 과제	수시 과제
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 및 지자체의 신청,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여성가족부 자체 발굴 등을 통해 평가 과제(안) 마련 여성정책책임관회의, 여성정책협조부서회의 등 주요 회의 또는 기관별 협의를 통해 과제 확정 	
특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가 크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정책 *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사회적 안전망 관련 정책 등 연구 기간 : 4~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과제 선정시 고려되지 못했던) 새로이 도입되거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정책 연구기간 : 1~3개월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 평가 과제(안) 마련 5월 : 평가 과제 확정 5월~10월 : 연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안 발생시 추진



6. 추진 절차 및 일정



1 평가 추진 지침 및 안내서 보급(2월 23일)

- 2006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및 「성별영향평가 안내서」 (평가 담당 부서 확정 후 별도 송부) 보급
 - ※ 「성별영향평가 안내서」 : 평가 사례, 평가 수행 방법, 참고 자료 등 수록

2 기관별 평가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통보(3월 7일)

- 담당자 통보시 희망 교육 일정 함께 통보(첨부 자료 1-1 양식)

3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 교육(3월 중)

- 2006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설명 및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V. 행정사항 참고)

4 기관별 평가 계획서 제출(4월 28일)

- 평가 대상 과제 선정
 - ▷ 내부 토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평가가 필요한 정책 최소 1개 이상 선정
 -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여성정책책임관의 주도하에 계획 수립 요망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13조(여성정책책임관)

제3항 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 기관의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 등

● 평가 계획 수립·제출

- ▷ 평가 대상 정책, 평가 결과 활용 방안 등 기재(첨부 자료 1-2 양식)
 - ※ 심층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계획서에 관련 사항 기재

5 평가 계획 검토 및 평가 과제 담당자 교육(4월~6월)

- 여성가족부가 각 기관의 평가 계획을 검토하고 평가 과제 및 평가 방법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기관에 계획 수정 요청 예정
- 평가 대상 과제 담당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추후 별도 통보)

6 심층 평가 기획 과제 확정(5월)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과제 확정

7 심층 평가 연구 추진(5월 중~10월)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층 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실시

8 평가 중간 점검을 위한 워크숍(7~8월 중, 추후 별도 통보)

- 참석 :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평가 대상 정책 담당자 등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발표 및 평가 중간 점검

9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10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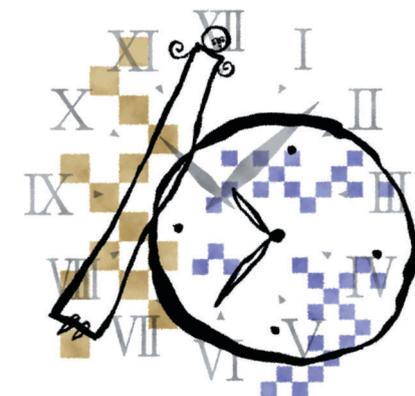
- 평가 대상 정책 담당 부서에서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 담당 부서는 기관내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첨부 자료 1-3 양식)

10 평가 결과 종합 평가 및 보고(06. 11~07. 2월)

- 각 기관의 평가 추진 실적에 대한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 ▷ 여성가족부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평가단 구성
- 익년도 첫 번째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최시 보고

▶ 연간 추진 일정표

일 정	추진 내용	비 고
2월	▶ 2005년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종합 평가 실시 ▶ 평가 지침 및 안내서 보급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3월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교육 실시 - '0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 평가 결과 발표 및 시상 예정	여성가족부
4월	▶ 기관별 자체 평가 계획서 종합 - 심층 평가 기획과제 목록 작성	각 기관 여성가족부
5월	▶ 평가 대상 과제 담당자 교육 실시 ▶ 심층 평가 과제 확정 및 연구 추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7~8월	▶ 중간 점검 워크숍 개최	여성가족부
10월	▶ 기관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 심층 평가 연구 완료	각 기관 여성가족부
11월~ '07.2월	▶ 2006년 기관별 평가 추진 실적 종합 평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 보고	여성가족부



IV. 종합 평가 및 평가 결과 활용 방안

*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종합 평가 : 여성가족부

- 각 기관의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 및 종합 평가 보고서 작성
 - ※ '05년 평가 기준 : 업무 협조, 평가 과제 수, 평가 내용, 환류 노력 등
- 우수 기관 및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예정
 - ※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여,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검토(예산 범위 내, '07년~) 등
- 평가 결과는 국무회의, 여성정책조정회의,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 등 주요 관계회의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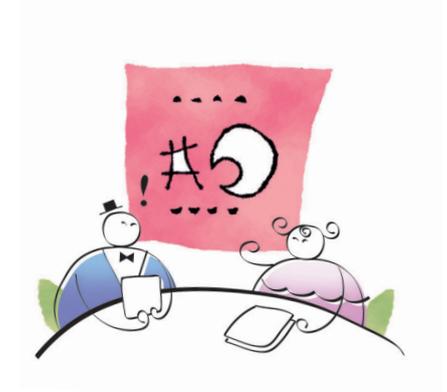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참고 사항 |

- ◆ 행정자치부 「국정시책합동평가」 관련
 - ▶ 2005년 현재 국정시책합동평가 지표에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가 포함
 - ⇒ 2006년 국정시책합동평가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종합 평가 결과를 지표로 반영할 예정

* 평가 결과 활용 : 각 기관

- 정책 개선
 - ▷ 양성평등한 정책 대안 마련, 신규 예산 편성, 남녀별 통계 활용 및 생산 활성화
 - ※ 여성가족부가 매해 평가 결과 환류 실적 점검
- 주요 제도와의 연계
 - ▷ 평가 결과 도출된 여성정책이 있을 경우 여성정책시행계획에 반영
 - ▷ 정책 혁신 사례, 정책 품질 향상 사례 등으로 적극 활용

V. 행정 사항



*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교육

- 추진 방법 :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1박2일 교육 진행
- ※ 지방 거주 교육생에 숙식 제공

구 분	1그룹	2그룹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교육, 성 인지력 향상 교육 등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교육, 성 인지력 향상 교육 등 관련 교육 경험이 있거나 지난해에도 담당자로 교육에 참여한 경우
일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27~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30~31일

※ 그룹간 균형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교육생 배치 임의로 조정 가능

- 교육 장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한국여성개발원 내(지하철 3호선 불광역)
- 교육 내용 : 교육생 그룹 확정 후 별도 안내(3월 20일 이전)

* 심층 평가 과제 신청

- 기획과제
 - ▷ 자체 평가 과제와 함께 (첨부 1-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4월 28일까지 제출
- 수시과제
 - ▷ 기획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과제 중 단기 연구로 추진할 수 있고 사회 이슈가 되는 정책이 있는 경우 (첨부 1-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5~10월 기간 안에 수시로 제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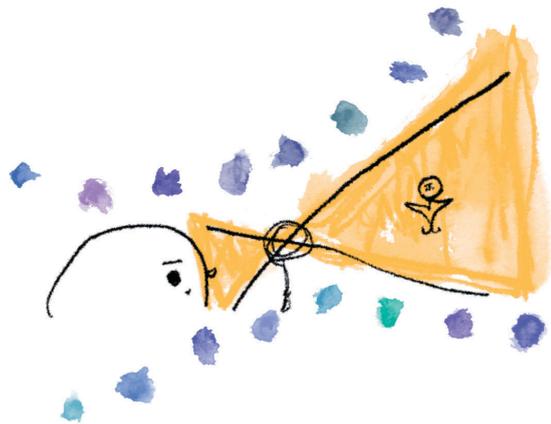
* 첨부자료

1. 작성 양식

22	1-1. 담당부서 및 담당자 통보 양식
23	1-2. 평가 계획서 작성 양식
25	1-3.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양식

2. 참고 자료

28	2-1. 근거 법령
29	2-2. '05년 평가 과제 목록
32	2-3. '05년 평가 담당 부서 및 담당자
35	2-4. '05년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현황



첨부 1-1

담당 부서 및 담당자 통보 양식

【 기 관 명 】

□ 평가담당부서

평가 관리·책임	여성정책책임관(중앙), 또는 평가담당부서가 속한 실·국의 장(지방)		
부서명	부서명	팩 스	
과 장	성 명	전 화	
담당자	성 명(직급, 성별)	전 화	
		이메일	
교육 참석자	성 명(직급, 성별)	전 화	
		이메일	

※ '교육 참석자'란은 담당자와 교육 참석자가 다른 경우만 기재

□ 희망 교육 일정 및 그룹

※ 희망하는 교육 일정에 "○" 기재

구 분	숙 박	비숙박
1그룹 (3월 27일~28일)		
2그룹 (3월 30일~31일)		

※ 1그룹 : 양성평등 및 성 인지력 향상 관련 교육 무경험자
 2그룹 : 양성평등 및 성 인지력 향상 관련 교육 유경험자 또는 지난해에도 성별영향평가 담당자로 교육에 참여한 경우

첨부 1-2

평가 계획서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 평가 과제당 2~3p 내외로 작성

I. 개요

□ 평가 대상 정책

(※ 평가 대상 정책명 기재)

○

□ 평가 대상 정책 선정 방법

(※ 내부 토의, 외부 전문가 자문, 단체 의견 수렴 등의 과정 기재)

○

II. ○○○(평가 대상 정책명)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 정책 개요

○ 목적

○ 법적 근거

○ 연혁

-

○ 주요 내용

(※ 세부 사업, 추진 실적, '06년 예산 등)

-

성별영향평가 실시 필요성

(※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으로 선정한 이유)

○

평가 방법

(※ 심층 성별영향평가 추진(여성가족부 예산 지원) 여부 및 소요예산, 기타 외부 전문가 자문, 내부 문서 및 관련 자료 분석 등)

○

평가 결과 활용 계획

(※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 정책혁신 사례로 활용 등)

○

정책 소관 부서 및 연락처

○

Ⅲ. ○○○(평가 대상 정책명)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 이하 II와 동일한 목차로 작성)

○

첨부 1-3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 평가 과제당 10p 내외로 작성

I. 평가 개요

총평

○

잘된 점

○

미흡한 점

○

II. ○○○(평가 대상 정책명) 성별영향평가

1

성별분리통계의 생산·활용

○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

3 정책 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

4 예산 편성의 양성평등성

-

5 정책서비스 전달 방식의 양성평등성

-

6 정책 홍보 방식의 양성평등성

-

7 정책 수혜(예산 배분 포함)의 양성평등성

-

8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

9 평가 결과 활용 방안

-

Ⅲ. ○○○(평가 대상 정책명) 성별영향평가

※ 이하 II와 동일한 목차로 작성

Ⅳ. ○○○(평가 대상 정책명) 성별영향평가

※ 이하 II와 동일한 목차로 작성

1.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② 여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2.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1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3.12)

제9조(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지침 등)

- ① 여성부장관은 법 제10조 제1조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석·평가계획 및 분석·평가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조정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3.12)

* 성별영향평가 참여 기관 및 과제 : 총 53개 기관 85개 과제

- ※ 평가 대체 기관(기획예산처, 법제처) 제외
- ※ : 심층 평가 과제(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양행정기관 : 37개 기관 51개 과제

연번	기관명	과제 수	과제명
1	국가보훈처	1	· 보상금 지급제도
2	공정거래위원회	2	· 소비자 정보 제공 촉진 · 소비자 주권 실현(대전사무소)
3	금융감독위원회	1	· 사금융이용자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
4	청소년위원회	1	· 청소년 참여 정책
5	중앙인사위원회	2	· 여성 공직진출 확대 및 관리직에서의 대표성 제고 · 국가인재의 적극 발굴·활용
6	교육인적자원부	1	· 여학생 보건관리 연구학교 운영
7	재정경제부	1	· 소비자 보호 종합시책
8	통일부	1	· 북한 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사업
9	외교통상부	1	·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10	법무부	1	· 수형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11	국방부	2	· 군내 모성보호 강화 · 병영시설 개선
12	행정자치부	1	· 정보화 마을 조성 및 운영
13	과학기술부	1	· 과학기술 앰배서더(홍보대사) 사업
14	문화관광부	2	· 외국인 노동자 문화가이드북 제작·보급 ·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사업
15	농림부	1	· 농업종합자금 지원
16	산업자원부	1	· 연구인력 고용 지원
17	정보통신부	1	· 정보통신 인력 양성

연번	기관명	과제 수	과제명
18	보건복지부	1	•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19	환경부	1	• 유해물질 함유제품 관리
20	노동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 실업자 재취업 훈련 • 근로자의 날 정부 포상 • 비정규직 고용 개선 5개년 계획 수립 •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원 • 취업 애로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
21	건설교통부	1	• 임대주택 건설·공급
22	해양수산부	1	•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23	국세청	1	• TIS(국세통합시스템) 웹 서비스 모니터링
24	관세청	1	•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환경 개선
25	조달청	1	• 우수제품 선정 지원 제도
26	통계청	1	• 다양한 남녀별(성 인지) 통계 작성·보급
27	병무청	1	• 병무행정 서비스 모니터링
28	경찰청	1	•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29	기상청	1	• 공개경쟁 채용시 양성평등에 의한 균형 인사 추진
30	문화재청	1	• 중요무형문화재 성별 분석 체계 마련
31	농촌진흥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조성 • 도시민을 위한 전원농업 교육
32	산림청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직 공무원 임용 • 정부위원회 운영 • 과학기술인 채용 비율 확대
33	중소기업청	1	• 여성 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제도
34	특허청	1	• 지식재산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순회 설명회
35	식품의약품안전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및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 육아에 대한 걱정 없는 근무환경 조성
36	소방방재청	1	• 맞춤형 재해구호물품 세트 기준 개선
37	해양경찰청	1	• 민간참여제도

지방자치단체 : 16개 기관 34개 과제

연번	기관명	과제 수	과제명
1	서울특별시	1	• 문화시책사업 전반
2	부산광역시	1	•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3	대구광역시	1	• 보육정책
4	인천광역시	1	• 청소년 성문화센터 및 드롭인센터 운영
5	광주광역시	1	• 자활사업
6	대전광역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 • 재가노인 보호서비스 •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 •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7	울산광역시	1	• 가족단위 상담·교육사업
8	경기도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 여성농업인 대표성 및 지위 향상 • 여성노인 취업능력 제고 • 청소년문화존사업 • 농업인력육성정책 • 공공근로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 청년뉴딜 사업
9	강원도	1	• 노인정책
10	충청북도	1	•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11	충청남도	1	•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정책
12	전라북도	1	• 건강한 가정과 가족 기능 강화
13	전라남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촉진훈련 • 공공보건의료 이용
14	경상북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업무 • 시설아동 보호 정책
15	경상남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마을 조성 • 공무원 국내외 훈련 • 소비자 보호 시책 •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아름다운 도시계획 수립 • 도서관 시설 이용 활성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준
16	제주도	1	• 노인 일자리 창출

첨부 2-3 2005년 평가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중양행정기관

연번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1	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획관	김병철
2	법제처	총무과	최봉래
3	국정홍보처	혁신인사과	김정호
4	국가보훈처	혁신기획관실	정길재
5	공정거래위원회	재정협력팀	이상명, 조정우
6	금융감독위원회	혁신행정과	김세정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8	청소년보호위원회	혁신기획과	강정민
9	중앙인사위원회	혁신인사기획관실	김선중
10	재정경제부	혁신기획관실	허진, 주병근
11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권성연
12	통일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윤민호
13	외교통상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실	김종해
14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김정복
15	국방부	혁신기획관실	박병로
16	행정자치부	참여여성팀	김영아
17	과학기술부	인력기획조정과	한형주
18	문화관광부	기획총괄담당관실	신종필
19	농림부	여성정책과	임채록

※ '05년 3월 기준이며 별도 통보한 경우 조직 개편 및 인사 이동 사항 등 반영
 ※ 담당 부서를 통보하지 않았던 기관은 공란 처리

연번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20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과	강호성
		산업인력기술과	김경미
21	정보통신부	혁신기획관실	김용수
22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진광현
23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조광석
24	노동부	여성고용팀	김광석
25	건설교통부	혁신기획관실	이영근
26	해양수산부	혁신기획관실	배기원
27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이춘식
28	관세청	총무과	김 혁
29	조달청	혁신인사기획관실	김상규
30	통계청	혁신인사과	조한석
31	병무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이길섭
32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정휘상
33	기상청	기획과	조진호
34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	채수희
35	농촌진흥청	평가조정담당관실	조남준
36	산림청	혁신인사기획관실	류재순
37	중소기업청	혁신인사기획관실	송승현
38	특허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박기남
39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획관실	우영택
40	소방방재청	총무과	김상진
41	해양경찰청	조직관리팀	정환기

광역지방자치단체

연번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1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이명운
2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	이혜정
3	대구광역시	여성정책과	김미애
4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김영식
5	광주광역시	여성정책과	박평시
6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과	송정욱
		여성정책위원회	이갑숙
7	울산광역시	여성정책과	김영로
8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	최 관
9	강원도	여성아동정책과	최명순
10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오세화
11	충청남도	여성정책관실	곽행근
12	전라북도	여성정책과	임동섭
13	전라남도	여성정책과	나동주
14	경상북도	여성정책과	정시근
15	경상남도	여성정책과	김윤경
16	제주도	여성정책과	고영숙

첨부 2-4 2005년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현황

('05. 9월말 현재)

기관명	여성정책책임관	
	직 위	직 급
중앙인사위원회	정책홍보관리관	이사관
국가청렴위원회	정책기획실장	관리관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	이사관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	관리관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장	관리관
국정홍보처	홍보기획단장	이사관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장	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관리관	이사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	이사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홍보관리관	부이사관
비상기획위원회	사무처장	1급상당
청소년위원회	정책홍보관리관	부이사관
재정경제부	차관보	1급상당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1급상당
과학기술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관리관
통일부	혁신재정기획실장	관리관
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장	외무관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검사
국방부	차관보	1급상당
행정자치부	지방지원본부장	이사관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관리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관리관

21세기 남녀평등헌장



기관명	여성정책책임관	
	직 위	직 급
산업자원부	차관보	1급상당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관리관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관리관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관리관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	관리관
여성가족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관리관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관리관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관리관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	이사관
관세청	정책홍보관리관	이사관
조달청	정책홍보본부장	부이사관
통계청	정책홍보관리관	부이사관
기상청	정책홍보관리관	이사관
대검찰청	형사부장	검사
병무청	정책홍보관리관	부이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무관
소방방재청	정책홍보본부장	이사관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	부이사관
농촌진흥청	정책홍보관리관	부이사관
산림청	정책홍보관리관	이사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부이사관
특허청	정책홍보관리관	이사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홍보관리관	부이사관
해양경찰청	정책홍보관리관	치안감

○ 리는 2001년을 참된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포한다.

ㄷ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 뿌린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 열매를 맺는 시대가 될 것이다.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는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삶의 당연한 주체가 되어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남녀평등 사회로 가는 지표를 세우고자 한다.

- I. 남녀는 가정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한다. 특히 자녀양육은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남녀가 평등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한다.
- I.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사회적인 기여로 인정되고, 마땅히 보호받는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I. 남녀는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여성은 고용과 임금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공유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I. 남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한다. 정치와 공공 부문에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I. 남녀는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갖는다.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도록 교과 내용을 개선하고, 지식정보 사회를 맞아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 I. 남녀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가꾸어 나간다. 이를 위해, 가정과 직장, 대중매체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이고 남녀 평등한 의식과 관행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여성을 향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 I. 남녀는 환경보전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남녀평등 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한다.

2001년 7월 3일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종합청사
Tel. 2100-6600 www.mogef.go.kr
